

KIEP

오늘의 世界經濟

World Economy Update

제 04 - 10 호 / 2004년 4월 28일 발간

2004년 5월 1일 EU 25개국으로 확대

작성자 : 김홍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/부연구위원

박영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

【hckim@kiep.go.kr, ☎ 3460-1036】

【ygpark@kiep.go.kr, ☎ 3460-1159】

主要內容

- 2004년 5월 1일 EU는 중·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정식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25개국으로 확대됨.
 - 이로써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한 이후 진행되어 온 중·동구 유럽의 서유럽 체제로의 편입이 완성되었음. 유럽은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체제의 구축이 가능해졌으며, NA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었음.
- 확대된 EU는 경제권의 확대 이외에도 교역 및 투자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, 향후 확대된 EU의 위상의 재정립, 신규 가입국 경제의 발전, 대외경제관계의 변화 등 주목할 만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음.
 - 유로화의 확대 적용, EU의 추가 확대, 유럽헌법, 공동외교안보정책 등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음.
- EU의 확대를 맞이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은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.
 - 공동 대외관세율의 조정, 무역제한조치의 확대적용, 환경, 기술표준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확대 적용 등 확대와 관련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문별 대응전략을 도출해야 할 시점임.

對外經濟政策研究院

1. EU 5차 확대와 그 의의

□ 2004년 5월 1일 EU는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중·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이 포함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됨.

- 이번 제5차 확대를 통해 폴란드, 헝가리, 체크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몰타, 키프러스의 10개국은 EU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.

- 이로써 2002년 11월 18일 일반이사회(General Affairs Council)에서 결정되었고, 동년 12월 코펜하겐 유럽이사회¹⁾에서 발표되었으며 2003년 4월 아테네 유럽이사회에서 확인된 가입협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음.

□ 회원국들은 5월 1일을 전후로 EU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음.

- 5월 1일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 및 일부 집행위원들은 2004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공식적인 EU확대 행사를 가질 예정임.

- 이외에도 폴란드, 몰타, 브뤼셀, 오스트리아-슬로베니아 국경 등지에서 EU확대를 환영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.

□ 이번 EU 확대로 유럽의 이념적 분단이 공식적으로, 제도적으로 종식되었음.

- 이번 제5차 확대는 중·동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유럽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지금까지의 확대과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. 지난 50년간 지속되었던 유럽에서의 이념 대결, 유럽의 분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.

- EU가 중·동구지역을 포함하고 나아가 서부 발칸지역과 독립국가연합(CIS) 지역과의 관계 증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범유럽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초단계라 할 수 있음.

1) 유럽이사회(Council of Europe)는 1년에 4차례 개최되는 EU회원국 정상들의 정상회담을 의미함.

- 따라서 EU는 유럽의 안정과 번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EU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게 됨.

2. 5차 EU확대의 과정

□ 중·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 동 지역의 EU 가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.

- 1989년 EU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마자 이들 국가들의 경제재건을 위한 PHAR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.

- 또 중동구 및 주변국들과 준회원국 협정인 유럽협정(Europe Agreement)을 체결하였음. 그 체결 시기는 헝가리·폴란드(1990년), 불가리아·체코·루마니아·슬로바키아(1993년), 에스토니아·라트비아·리투아니아(1995년), 슬로베니아(1996년)였음.

- 터키(1987년)를 시작으로 키프로스·몰타(1990년)가 EU가입을 신청하였으며, 마침내 헝가리·폴란드(1994년), 루마니아·슬로바키아·라트비아·에스토니아·리투아니아·불가리아(1995년), 체코·슬로바키아(1996년) 등 총 13개 국가들이 EU 가입을 신청하였음.

□ EU도 1990년대 초반부터 중·동구 국가들의 EU가입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음.

- 1993년 6월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기존 EU회원국은 중·동구 국가의 EU가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가입조건으로 코펜하겐 기준(Copenhagen criteria)을 제시함²⁾.

2) 코펜하겐 기준은 신규 가입대상국들이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을 뜻함. 정치적 조건으로 민주주의, 법치주의, 인권, 소수민족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것, 경제적 조건으로 시장경제체제 및 EU내에서의 경쟁압력과 시장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, 그리고 제도적 조건으로 EU의 정치, 경제 그리고 통화 동맹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 등으로 구성됨.

-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유럽이사회에서는 암스테르담 조약(Treaty of Amsterdam)을 체결하여 1998년부터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음.

- 1998년 3월부터 1차 가입협상국(헝가리, 폴란드, 체코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키프러스)과 가입협상을 시작하였으며, 이어서 1999년 헬싱키 유럽이사회에서 2차 가입협상국(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슬로바키아, 루마니아, 불가리아, 몰타)을 선정하여 동년 10월부터 가입협상을 시작하였음.

□ 2001년 이후 협상의 결과가 구체화되어 나타났음.

- 2001년 12월 라켄 유럽이사회에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10개국의 가입이 유력함을 발표.

- 이어서 2002년 10월 집행위원회의 가입추진 현황 보고서인 “Toward the Enlarged Union”은 2002년 말까지 협상의 완료, 2003년 중 국가별 비준을 거쳐 2004년 5월 1일부터 EU확대를 완료할 것을 권고함.

□ 2003년을 통해 국가별 비준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4년 5월 1일 10개국의 EU 가입이 완성되었음.

3.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

1) 경제권 확대

□ 25개 회원국으로의 EU 확대와 함께 인구, GDP, 교역규모 등에서 세계최대 단일시장으로 거듭나게 됨.

- 확대된 EU는 인구 4억 5천만 명(기존 3억7천만 명), GDP 8.88조 유로(기존 8.52조 유로), 면적 398만km²(기존 319만km²) 그리고 총 교역규모 4.5조 유로(세계교역의 40% 차지)의 거대 단일시장으로 거듭나게 됨.

<표 1> 확대된 EU와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권 비교(2002년 기준)

	EU(25개국)	미국	일본
인구(백만 명)	453.5	268	126
면적(km ²)	3,984	9,370	380
GDP(십억 달러)	9,003	9,960	4,500
1인당 GDP(달러)	19,852	34,600	37,500

자료: IMF

- 기존회원국의 경우 GDP가 약 0.7%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, 신규가입국의 경우 1.3%~2.1%의 GDP 증대효과가 예상됨. 그리고 신규고용창출은 약 30만 명 정도로 전망됨.
- EU의 확대에 따른 EU경제권은 25개 EU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EU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중인 지중해 연안 및 북아프리카국가와 중남미국들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함.

2) 신규 가입국들의 EU 공동시장으로의 편입

□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기존회원국보다는 신규 가입국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.

- 2004년 5월부터 10개 신규가입국은 상품, 서비스, 인력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이 적용되는 EU의 단일시장에 참여하게 되며³⁾, 이는 경쟁과 투자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교역증대를 가져오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.
- 신규 가입국은 EU 가입과 동시에 EU의 공동대외관세율, 자유무역협정, 반덤핑 등 무역제제조치 등이 자동으로 적용되며, EU와 EFTA⁴⁾간의 EEA(European Economic Area)에도 가입하게 됨.

3) 인력의 이동 등은 한시적으로 제한을 받음.

4) EFTA의 회원국으로는 아이슬란드, 노르웨이, 스위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임.

- EU와 신규가입국간의 상품교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, 완전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이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.
- 신규 가입국들은 또한 투자,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경영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역동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음.

□ EU 확대에 따른 기존회원국들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지만, 신규 가입국들의 경제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
- 실제로 10개 신규 가입국들의 총인구는 EU 전체 인구의 19%를 점하고 있지만, 총 GDP는 EU 전체 GDP의 5%에 불과함.
- 그리고 기존회원국들은 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,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EU의 지역 및 결속기금(Regional and Cohesion Fund) 지원으로 직접적인 비용도 늘어나게 됨.
-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확대된 단일시장은 신규 가입국에서의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임.

□ 신규 가입국이 기존 EU 회원국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.

- 실제로 폴란드나 헝가리의 임금이 기존회원국들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, 단위당 노동비용이 향후에도 기업의 중요한 생산결정 요인으로 유지될 것이지만, 반드시 가입이후 서유럽 기업들이 그들의 자국시장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.
- 동유럽에 대한 투자는 서유럽 자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,

추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임.

-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생산분야만 중·동구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, 서유럽의 노동인력은 보전될 것으로 전망됨.

3) 세계 교역 및 투자기회 확대

□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의 출현으로 무역 및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- 신규 가입국들의 무역 및 투자관련 절차가 단순화 및 통합되고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안정성 향상에 따라 무역 및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.

- 신규 가입국들도 EU의 공동대외관세 정책을 따르게 됨에 따라 평균적으로 관세인하로 인한 교역증대도 기대됨.

- EU의 공동대외관세율이 역외국가 상품의 신규 가입국 수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현 EU의 평균 관세율이 대부분의 신규가입 국가들의 관세율보다 낮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됨.

- EU-중·동구 국가간 무역특혜 규정에 따라 신규 가입국 상품의 EU로의 수출시 적용되던 특혜 원산지규정이 관세동맹에의 편입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신규가입국가들의 역외국가로부터의 부품 수입증가도 예상됨.

□ 그러나 역내 단일시장확대로 인한 무역전환효과(Trade Conversion) 및 역외국가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우려됨.

- 신규 가입국가들은 가입이전에도 자유무역협정(Europe Agreement)에 의해 농산물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완전한 무관세 혜택을 누려 왔다는 점에서 금번 EU 가입으로 교역구조 자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- 그러나 기존 EU 기업들의 중·동구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과 생산기지 이전, 역외가공무역 확대 등 자급자족 체제가 심화됨으로써 점차 EU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을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예상된다.
- EU의 현행 수입관세 및 반덤핑조치 등이 역외국의 신규 가입국 지역에 대한 수출품목에도 자동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·동구 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.

4) 자급자족체제 심화 가능성

- 확대된 EU는 역외국과의 교역증대도 예상되나, 역내 자급자족 체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.
- EU 역내의 다양성의 확대로 인하여 역외국의 필요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. 실제로 신규 가입국 중 일부가 북아프리카 및 카리브지역의 대체 투자지로 각광받은 바 있음.
- 확대이후 EU는 자본이나 기술은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노동력은 기존 회원국으로 이전되는 등의 분업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 이에 따라 그동안 스페인, 포르투갈, 그리스 등 기존회원국내 저임금국에 속했던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신규 가입국으로 상당부분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.

3. 확대 이후 향후과제

- 중·동구 국가들의 EU 편입으로 인해 기존회원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확대이후 안정적인 EU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임.
- 그동안 EU의 각종 구조기금이나 지원금의 최대수혜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과 신규가입국간의 지원금 분배를 놓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특히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공동농업정책(CAP)의 개혁은 소득수준이 낮고 농업비중이 높은 중·동구 국가들의 가입으로 더욱 시급한 과제임.

□ 한편, 확대이후 신규 가입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.

- 2010년까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잠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불법이민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음.

- 그러나, 가입이후 신규 가입국에서 기존회원국으로의 이민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.

- 1990년대 초 중·동구 국가들의 개방 이후 상당수의 노동력이 서구로 이주한 이후 최근 수년간의 감소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가입 이후 이민인구는 현재 EU전체인구의 0.1%(약 335,000명) 정도이며, 이후 30년 이후에도 이민은 EU 인구의 1.1% 정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.

□ 신규가입국은 기존회원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임.

- 기존회원국과의 소득격차는 현재 신규 가입국들의 경제성장세가 기존회원국보다 높다하더라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- 중·동구 10개 신규가입국의 2002년 평균 1인당 GDP(PPP 기준)는 EU 평균의 47%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 체크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EU 평균에서 1/3 정도 낮은 수준으로 기존 EU 회원국 중 최빈국에 속하는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. 헝가리의 1인당 GDP는 EU 평균의 거의 절반수준이며, 폴란드, 슬로바키아, 그리고 발트 3국들은 EU 평균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.

- EIU는 신규 가입국들이 EU의 평균 1인당 GDP 수준으로 도달하기까지 수

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<표 2> 신규가입국의 EU 평균 1인당 GDP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한 소요기간

국가	소요기간(년)	1인당 GDP 성장률 전망치 ¹⁾ (%)
체코	39	3.7
에스토니아	31	4.8
헝가리	34	4.0
라트비아	58	3.9
리투아니아	53	3.8
폴란드	59	3.8
슬로바키아	38	4.0
슬로베니아	31	3.2
10개 신규가입국 평균	59	3.8

주: 1) EU의 1인당 GDP는 매년 2% 성장을 가정함

자료: Economist Intelligence Unit, The Economist, November 2003.

□ 신규 가입국은 EMU 가입과 유로화의 도입을 준비해야 함.

- 신규가입국의 EMU 가입에 대한 적절한 시기나 정책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.
 - EMU 가입은 신규 가입국들의 주요 교역파트너인 EU와의 교역을 더욱 증대시키고, 투자에 따르는 환위험도 제거해줄 수 있으며, 장기금리도 낮추게 할 것임.
 - EU 법규에 따르면, 신규 가입국들은 EMU 가입이전에 수많은 가입조건, 소위 말하는 물가 및 환율 안정, 정부의 재정 그리고 장기금리 등에 대한 마스트리히트의 수렴기준(convergence criteria)을 충족해야만 함.
 - 따라서 신규 가입국들의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성급한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, 또한 환율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음.
 - 마스트리히트 기준의 경직성이 수렴과정동안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

기 때문에 신규 가입국에 대한 조기 EMU 가입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평가가 필요함.

4. 한국의 대응

□ EU의 확대는 한국으로서는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의 형성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며,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교역구조에서 탈피하여 교역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EU와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가 절실함.

- 그러나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EU의 역외교역비중이 축소될 수 있고 기존의 우리에게 불리한 통상규범이 중·동구에 확대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.

-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수출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, 경쟁압력 증대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.

○ 그동안 중·동구시장에서 고관세로 인해 진출하기 어려웠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전략을 세우고, 기존 EU 기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철강, 자동차, 화학제품 등에 대해 원가절감 노력을 배가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.

○ 그리고 중·동구 국가들이 EU의 반덤핑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공식품, 화학 및 철강 등의 품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, 자동차와 의류산업 등은 현지 직접진출 즉, 관세회피성 직접투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□ EU 확대로 EU의 환경 및 통상정책이 신규 가입국에도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됨.

- 신규 가입국들도 EU의 공동대외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신규가입국과의 교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.

- 다만, 이러한 관세율 인하효과는 기존 관세율이 EU의 공동관세율보다 낮았던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 요구를 검토해 나가야 함.
- 예를 들어 공산품의 경우 EU의 공동관세는 3.6% 수준으로 폴란드, 슬로베니아, 헝가리와 같이 기존 7% 이상의 관세율을 유지했던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, 발트 3국과 같이 3.6%에 못 미치는 관세율을 유지했던 국가에서는 오히려 관세인상이 전망됨.
- 그리고 그동안 EU와의 교역 및 투자관계에서 적용되었던 각종 제한조치들이 신규회원국과의 관계에도 적용 확대되게 됨.
 - EU는 현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(컬러 TV 등 10개 품목)와 세이프가드(철강제품) 및 상계관세(반도체)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.
 - 따라서 한국은 수입제한조치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지생산 확대나 신규 가입국으로의 진출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.
- EU가 1990년대 말 이후부터 강화해 오고 있는 환경, 노동, 식품위생 등 엄격한 환경규제도 신규 가입국에 적용됨에 따라 향후 신규 가입국으로의 수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.
- 확대된 EU의 새로운 인접 국가들을 대EU시장 진출 우회기지로 활용할 필요도 있음.
 - EU의 새로운 국경이 되는 러시아, 벨로루시, 우크라이나 등 국가들의 지리적,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EU 시장진출의 우회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.
 - 그리고 지중해 연안 8개 국가 및 구유고연방, GCC 국가들도 EU와의 FTA 또는 GSP 제도를 통한 무역특혜를 향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함.